



시민행복시대를
열겠습니다

2025년 식량산업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계획

- 벼 건조·저장 신축 지원사업 -

논 산 시
[농촌활력과]

2025년 식량산업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계획

❖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한 생산장비·기반시설·농기자재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사업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당면 현안 해결

▶ 추진근거: 양곡관리법제22조,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, 충청남도농어업·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제8조

1 추진방향 및 지원근거

- 농업시설 구축 및 기계화 촉진,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부족 해소
- 논산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)

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2.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, 가공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기자재, 시설 및 포장재 지원사업

2 지원계획

- 사업기간: 2025. 6. ~ 12.
- 신청기간: 2025. 6. 23. ~ 7. 7.
※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에 의거 신청기간 단축 추진(긴급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논산시청 농촌활력과 친환경농업팀(☎041-746-6062) 방문 신청
- 지원대상: 정부지원RPC, 농업협동조합, 도정업체 등 미곡 취급 법인격 단체
- 우선순위: 참여농가 수, 계약재배면적, 매출량 등
- 지원내용: 벼 건조·저장(사일로 등) 신축 지원사업
- 지원계획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
		계 (100%)	보조금			자부담 (50%)
			소계(50%)	도비(25%)	시비(25%)	
벼 건조저장 신축 지원	1식	610,000	305,000	152,500	152,500	305,000

※ 보조비율에 의거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

3 세부 추진계획

□ 사업시행: 시장

□ 사업시행절차

도	: 사업추진 계획수립
①↓ ↑④	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
시·군	: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(사업자가 요청한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)
②↓ ↑③	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
사업대상자	: 사업실시(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후 승인요청)

□ 공통사항

- 모든 사업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, 공급단가가 다를 경우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
-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로 사업비 불용 최소화
- 시행(납품) 업체 선정 및 공급
 - 시공(장비구입) 및 업체 선정은 교부결정 후 입찰{추정가격 2,000만원 (부가세미포함) 초과, 자부담 비율 50% 미만일 경우}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함이 원칙이나 자부담 비율이 50%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가 업체 선정 가능
 - 다만, 사업대상자가 입찰대행을 원하는 경우 논산시에 입찰대행 요청서 제출
 - ※ 관련규정: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, 2019.5.28.)

가. 사업비 집행

-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(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)
 -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 가능
 - 회계장부의 비치 정리: 현금 출납부(보조사업과 자부담을 분리 정리)
- 전용통장을 통한 계좌입금 원칙(자부담 우선 집행)

-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
- 지출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.(단, 체크카드 사용 가능)

○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

-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제출한 사업(실행)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⇒ 사업계획서 작성 철저(세세하게 작성)

○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만 인정

-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융거래내역
-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

나. 집행절차

- 사업을 완료하고 청구서, 완료확인서, 전·중·후 사진, 세금계산서, 자부담금 등 집행증빙서,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- 사업비 정산(지출)은 반드시 개설한 통장(금융기관)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및 정산 시 금융기관거래내역서 제출
-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경우에는 환급액에 대하여 사업비 미산정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급 불가
- 보조금 청구서, 증빙서류, 현장 및 기타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

다. 사업비 검정 및 정산

-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논산시에 사업완료 검사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,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
-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

라.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

-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
- 시장은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변경 승인 요청
- 시장·군수는 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 타당성 검토하여 도에 변경 승인 요청
 -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

▶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사유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
- 총 사업비의 30% 미만은 시·군 승인, 30% 이상은 도 승인 후 시행

-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

마.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


- 사업비 집행은 「보조금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
- 시장·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시설·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·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
 - *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
 - *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(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)
-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
- 사업 완료시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용하여 집행 후 사업비 실적 보고 및 정산 실시
- 모든 시설·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함

《 부기등기의 내용 》

이 부동산(건물)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,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00000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.

-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,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확인(건축물, 기계장비류)
- 시장은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·장비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·점검을 실시하고,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
- 점검항목 : 세부사업계획 이행,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

중요재산	사후관리기간		처분 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동산 (육묘장, 저장고, 창고, 작업장, 가공·도정공장 등) 	준공일	1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·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○ 매각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·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*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안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동산 종물 (고정식 기계·설비 등) 	설치완료일	7년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동산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 (콤바인, 트랙터, 관리기 등) 	구입일	5년	

시설 표지판(예시)		설치 개요
 <p>- 보조사업명 -</p> <p>이 시설은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.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설치대상) 사업별로 연간 도비 5천만원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■ (규격) 가로 35cm, 세로 25cm 이상 ■ (재질)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+엠브럼 주석주물 금속·비금속·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강화유리 물질
사업명		
총사업비	백만원(국비, 도비, 시군비, 기타)	
지원기간	20 . . . ~20 . . .	

바. 제재 및 처벌내용

- 사후관리 및 기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
-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,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, 부도·폐휴업·사업포기·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(최대 5년간)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·징수됨

*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,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

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3931호, '16.1.28) 이후,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,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

4 사업별 세부내역

[벼 건조·저장시설 지원]

- 감 리 비: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비에 포함
- 토목공사: 부지 내 기초공사(배수, 배관, 통신선로 등), 포장공사, 부대설비공사 등
- 건축공사: 현미가공장, 백미가공장, 포장장, 출하장,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, 사무실, 회의실, 일반창고,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
 - *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, 회의실, 교육장, 탈의실, 화장실, 식당, 휴게실, 당직실,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% 이내로 제한
 - * 지원 제외 : 설계비, 철거비, 이설비, 단순 소모품 등
- 전기·통신·소방공사 등: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, 방송통신설비공사,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
- 시설·설비·장비류 설치 공사
 - 현미부: 원료정전기, 현미기, 현미분리기, 현미석탈기, 현미색채선별기, 현미부 집진기, 원료탱크, 현미탱크 등

- 백미부: 정미기, 연미기, 백미석탈기, 색채선별기, 백미부 집진기, 백미탱크, 품질검사장비, 특수미 가공시설(무세미 등) 등
- 포장부 및 제어부: 체선별기, (비철)금속선별기, 포장기(PET 등 소포장기 포함), 로봇적재시스템,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, 재고관리시스템,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
 - * 가공기계: 연중 균일한 품질(외관, 식미 등)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
 - * 품질검사장비는 계량, 성분, 백도,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(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)
- 유통시설·장비류: 화물차량, 파렛트, 지게차 등
- 위생시설·장비류: 오수처리시설, 소독실, 에어샤워기, 해충방제기, 청소기, 건조기 등
 - * 유통 및 위생시설·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제한

○ 기계·장비별 설치 기준

- 입·출고시설: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
- 건조시설: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
- 저장시설: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(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)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
- 자동제어시설: 입고·건조·저장·출고·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 관리(제어)할 수 있도록 설치(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, 재고관리시스템,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)
- 품질검사장비: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(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, 제현율 측정장치, 시료건조기, 함수율측정기 등)
- 저온저장시설: 단열처리(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)와 냉각시설(장치)이 설치되어 연중 15℃ 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
 - * DS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
 - *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(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를 활용하여 산출

5

행정사항

- 신청서식을 갖추어 2025. 7. 7.(월)까지 기한지켜 농촌활력과에 신청
 - ①사업신청서(서식 1), ②사업계획서(서식1-1), ③참여농가현황(서식 1-2),
④사업비 자부담 내역(잔액증명서 등), 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(농협의 경우 제외)
⑥부지 관련 자료(사진, 지적도, 토지등기부등본, 타인의 소유일 경우 매매(확약)계약서)